##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28호, 2022. 12. 1., 타법개정]

소방청(소방산업과), 044-205-7511

**제1조(목적)** 이 기준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비상콘센트설비"란 화재발생시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.
- 2. "수납형"이란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 및 배선용차단기등이 노출된 구조로 옥내소화전함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형태의 비상콘센트설비를 말한다.

제3조(구조)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
- 1.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2.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.
- 3.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, 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, 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4. 기기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내화배선으로,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하며,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.
- 5.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6. 전선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7.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8.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(콘센트를 말한다. 이하같다)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9. <삭 제>
- 10. 수납형이 아닌 비상콘센트설비는 외함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11. 외함(수납형의 부품 지지판을 포함한다)은 방청가공을 한 두께 1.6 mm이상의 강판, 두께 1.2 mm이상의 스테인 레스판 또는 두께 3 mm이상의 자기소화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12. 외함의 전면 상단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수납형의 경우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을 접속할 수 있는 단자만을 설치할 수 있다.
- 13. 외함이 재질이 강판등 금속재인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14. 외함에는 "비상콘센트설비"(수납형은 "비상콘센트설비(수납형)")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4조(부품의 구조 및 기능)** 비상콘센트설비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.
  - 1.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(배선용차단기)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- 2. 접속기는 KS C 8305(배선용 꽂음 접속기)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- 3.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.
    - 가.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%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, 현저한 광속변화, 흑화,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   - 나.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.
    - 다.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- 라.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300lx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떨어진 곳에 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.
  - 4.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.
- 제5조(주위온도시험) 비상콘센트설비는 주위온도가 (-10 ± 2) °C 및 (50 ± 2) °C의 온도에 각각 12시간 놓아두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제6조(비상콘센트설비의 기능) 비상콘센트설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- 1. 전원회로는 단상 220 V인 것으로서 공급용량은 1.5 kVA이상인 것으로 할 것. 다만, 단상교류 100 V 또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80 V인 것으로 공급용량은 3상 교류인 경우 3 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인 경우 1.5 kVA이 상인 것을 추가할 수 있다.
  - 2. 비상콘센트설비의 플럭접속기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상 교류 38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럭접속기(KS C 8305)를 단상교류 100 V 또는 단상교류 22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(KS C 8305)를 사용할 것.
  - 3.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용차단기 용량은 제2호의 접속기 용량과 같아야 한다.
- 제7조(절연저항시험)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MΩ이상이어야 한다.
- 제8조(절연내력시험) 제7조의 절연저항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 150 V이하의 경우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1,000 V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.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.
- 제9조 (표시) 비상콘센트설비의 외함(수납형은 부품지지판)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  - 1. 종별(함표면에"비상콘센트"표기 별도) 및 성능인증번호
  - 2. 제조년월일, 제조번호 및 로트번호
  - 3. 제조업체명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
- 5. ~ 8. <삭제>

제10조(세부규정)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.

제11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 1. 31.>

**제12조** 삭제 <2019. 1. 31.>

부칙 <제2022-28호,2022.12.1.>

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